



Governance Issue

20210908

김남은 팀장

nameun.kim@daishin.com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내부지분율 현황 공개 및 시사점

1. 주요내용

-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지분율 : 58.1%
- 상위 10대 그룹 내부지분율 : 57.7%
(총수 : 0.8% / 총수일가 : 2.4% / 계열회사 : 53.0% / 비영리법인 : 0.1% /
임원 0.03% / 자기주식 2.2%)

2. 시사점

I. 과소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시·제재, 모니터링이 필요

- (10대 그룹) 총수일가, 3.5% 내부지분율로 그룹 사실상 지배
 - 일반투자자, 지배력이 배제된 투자활동으로 주주권익 훼손의 우려
 - 소유지분에 비해 과도한 권한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감시·제재, 모니터링 필요

II.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우회적 지배력 강화 수단화 우려

- 그룹의 비영리법인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은 매우 긍정적
 - 다만, 비영리법인이 기업이 그룹의 영향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활용될 우려가 있음
- 우려가 있는 곳에 감시가 함께 공존해야 함

주요 내용

기업집단 수 : 71개
 소속회사 수 : 2,612개社
 내부지분율 : 58.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1년 9월 1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그룹)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社)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으며, 전체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주1)}은 58.1%로 지난해(64개 집단, 57.6%)보다 0.5%p 증가하였고 총수있는 6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55개, 57.0%)보다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내부지분율 : 57.7%
 (총수 : 0.8% / 총수일가 : 2.4%
 / 계열회사 : 53.0%
 / 비영리법인 : 0.03%
 / 임원 0.1% / 자기주식 : 2.2%)

눈에 띄는 점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에서 동일인(이하, 총수)의 내부지분율과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이 0.8%, 2.4%에 불과(총수가 있는 60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은 3.5%)하다는 점이다. 이 수치는 최근 20년간 일부 시점의 일시적 상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총수(0.8%) 및 총수일가(2.4%)의 내부지분율이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부지분율이 증가하고 있음은 계열회사의 내부지분율(53.0%)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총수 및 총수일가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본인의 자본보다 타인의 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총수의 내부지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SK그룹으로 0.03%로 나타났으며,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이 가장 낮은 그룹도 SK그룹으로 0.49%로 조사되었다. 전체 내부지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LG그룹으로 42.29%로 조사되었다.

표1. 10대 그룹 내부지분율

(2021.05 기업집단현황공시 기준)

기업집단	동일인	계열회사 수	내부지분율			
			총수	총수일가	계열회사	전체
삼성그룹	이재용	59	0.46%	0.96%	41.61%	45.13%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53	0.99%	3.62%	47.51%	52.62%
SK그룹	최태원	148	0.03%	0.49%	56.69%	60.41%
LG그룹 ¹⁾	구광모	70	1.70%	3.14%	38.53%	42.29%
롯데그룹	신동빈	86	0.98%	2.31%	75.02%	77.87%
한화그룹	김승연	83	0.83%	1.42%	54.37%	61.63%
GS그룹 ²⁾	허창수	80	1.33%	9.99%	54.12%	64.61%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33	0.41%	0.49%	61.80%	63.02%
신세계그룹	이명희	45	0.70%	2.35%	74.46%	77.01%
CJ그룹	이재현	79	7.03%	11.81%	52.38%	69.57%
10대 그룹 ³⁾ 합계	-	736	0.84%	2.39%	52.97%	57.73%
10대 그룹 평균	-	74	1.45%	3.66%	55.65%	61.42%
기업집단 합계(71개)	-	2,612	6.81%	8.36%	47.20%	58.1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ESG연구소

1) 2021년에 발생한 LG그룹의 LX계열 분리는 2021년 중 사건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2) 2021년에 발생한 GS리테일과 GS홈쇼핑간 합병은 2021년 중 사건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3) 10대 그룹: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으로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그룹, CJ그룹

주1) 내부지분율 :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

표2. 최근 20년간 10대 그룹 내부지분율

(2021.05 기업집단현황공시 기준)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수 (총수일가)	1.4 (3.3)	1.2 (3.5)	1.3 (3.1)	1.4 (3.6)	1.4 (3.7)	1.3 (3.4)	1.1 (3.2)	1.1 (3.3)	1.0 (3.1)	1.1 (2.9)
계열회사	42.2	42.4	43.3	45.3	46	44.1	44.7	45.6	44	50.3
내부지분율	45.9	46.2	47.1	49.2	49.8	47.9	48.3	49.3	47.4	53.5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수 (총수일가)	0.9 (2.7)	1.0 (3.0)	0.9 (2.8)	0.9 (2.7)	0.9 (2.6)	0.9 (2.5)	0.8 (2.5)	0.9 (2.4)	1.0 (2.5)	0.8 (2.4)
계열회사	52.8	49.6	49.5	50.6	54.9	55.5	55.2	54.3	54.2	55.2
내부지분율	55.7	52.9	52.5	53.6	57.6	58.3	58.0	56.9	56.8	57.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ESG연구소

이와 같은 현상은 총수 및 총수일가가 효율적인 자본 활용으로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배력하에 둘 수 있음을 총수일가의 낮은 지분율로 그룹 의미하지만, 동시에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배력이 배제된 투자활동으로 상대적으로 주주권익 훼손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총수 및 총수일가가 경영상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한다면 측면에서 감시가 필요 고려할 때, 총수의 내부지분율(0.8%) 및 총수일가(2.4%)의 내부지분율에 대한 모니터링과 과도한 권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회적인 지배력 확보에 비영리 추가적인 특이 사항으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내부지분율에 대한 감시도 필요한 부분이다. 총수 및 총수일가가 법인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감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중 계열회사를 통한 지분율 확보와 더불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활용될 수 있다.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전체 내부지분율 중 비영리법인을 통한 내부지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2.3%(57.73% 중 0.13%) 수준으로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했을 때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나,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이 2.39%임을 감안할 때 비영리법인의 내부지분율 0.13%는 감시가 필요한 대목이다.

표3. 10대 그룹 내부지분율

(2021.05 기업집단현황공시 기준)

기업집단	동일인	계열회사 수	내부지분율					
			총수일가		비영리법인		전체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삼성그룹	이재용	59	0.94%	0.96%	0.13%	0.13%	45.23%	45.13%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53	3.60%	3.62%	0.02%	0.02%	53.26%	52.62%
SK그룹	최태원	148	0.46%	0.49%	0.04%	0.03%	57.83%	60.41%
LG그룹 ¹⁾	구광모	70	3.17%	3.14%	0.27%	0.26%	41.39%	42.29%
롯데그룹	신동빈	86	2.69%	2.31%	0.09%	0.09%	78.14%	77.87%
한화그룹	김승연	83	1.46%	1.42%	0.08%	0.08%	61.42%	61.63%
GS그룹 ²⁾	허창수	80	10.44%	9.99%	0.32%	0.32%	62.07%	64.61%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33	0.51%	0.49%	0.50%	0.47%	62.96%	63.02%
신세계그룹	이명희	45	2.43%	2.35%	0.00%	0.00%	74.15%	77.01%
CJ그룹	이재현	79	11.77%	11.81%	0.19%	0.19%	70.65%	69.57%
10대 그룹 ³⁾ 합계	-	736	2.46%	2.39%	0.14%	0.13%	56.81%	57.73%
10대 그룹 평균	-	74	3.75%	3.66%	0.16%	0.16%	60.71%	61.4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ESG연구소

2) 2021년에 발생한 LG그룹의 LX계열 분리는 2021년 중 사건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3) 2021년에 발생한 GS리테일과 GS홈쇼핑 합병은 2021년 중 사건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4) 10대 그룹: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으로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그룹, CJ그룹

표4. 10대 그룹 내 대표회사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지분율

(2021.08 반기보고서 기준)

그룹	대표회사	비영리법인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삼성	삼성전자	삼성복지재단	보통주	4,484,150	0.1%
		삼성문화재단	보통주	1,880,750	0.0%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	-	-	-
SK	SK	최종현학술원	보통주	185,000	0.3%
LG	LG	LG연암문화재단	보통주	521,906	0.3%
		LG연암학원	보통주	3,350,761	2.1%
롯데	롯데지주	롯데장학재단	보통주	3,394,589	3.2%
		롯데장학재단	우선주	50,516	5.1%
		롯데문화재단	보통주	90,869	0.1%
		롯데문화재단	우선주	11,728	1.2%
		롯데삼동복지재단	보통주	54,807	0.1%
한화	한화	복일학원	보통주	1,371,105	1.8%
GS	GS	동행복지재단	보통주	1,505,000	1.6%
		허지영장학재단	보통주	60,000	0.1%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아산사회복지재단	보통주	1,684,436	2.4%
		아산나눔재단	보통주	431,844	0.6%
신세계	신세계	-	-	-	-
CJ	CJ	CJ나눔재단	보통주	164,004	0.5%
		CJ나눔재단	우선주	24,600	0.6%
		CJ문화재단	보통주	125,681	0.4%
		CJ문화재단	우선주	18,852	0.5%

자료: 한국ESG연구소, 반기보고서(2021.08)

같은날 공정위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주2)}가 57개 집단 소속 265개(총수있는 60개 집단의 2,421개社 중 10.9%)로 지난해(50개 집단, 210개社)보다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수일가가 4% 총수일가의 낮은 지분율 확보에도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여 기업집단의 경영활동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적이익 유 등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으로 유용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인이나 계열회사 등이 발생할 수 우려가 있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표5.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변동 추이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장사	23	24	30	29	33	29
비상장사	162	203	201	190	177	236
합계	185	227	231	219	210	26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2)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회사

시사점

I. 과소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시 제재, 모니터링이 필요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은 3.5%에 불과하다. 소위 10대 그룹이라 일컫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은 2.4%, 총수 본인은 0.8%의 내부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위 10대 그룹의 총수는 0.8%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는 계열회사의 내부지분율 53.0%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다.

총수일가의 낮은 지분율,
그룹 전체 지배
→ 타인의 지분을 활용에 대한
감시 필요

물론, 총수 및 총수일가의 자원 효율적 활용과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10대 그룹) 총수일가가 3.5%에 불과한 내부지분율로 그룹의 주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활용하여 계열회사의 내부지분율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면, 동시에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지배력이 배제된 투자활동으로 상대적으로 주주권의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과소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소수지분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과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한다는 관점에서 감시와 제재,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II.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우회적 지배력 강화 수단화 우려

일부 그룹은 복지재단 등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기부라는 형식으로 그룹 계열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따른다. 외형상 회사의 주식을 기부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비영리법인이 설립 이후에는 출자받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룹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의결권 행사는 총수 및 총수일가의 의결권을 보완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온전한 기부활동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우회적인 지배력 확보에
비영리법인이 활용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 필요

물론, 그룹이 복지재단 등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다양한 기부활동과 캠페인 등으로 나눔의 의미를 확산하는 사회적 공헌활동은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우리가 지적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공헌활동이라고 표현된 활동 중에 그룹의 영향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발생 가능한 우려가 있다면 감시 또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공정위가 2020.8.31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2020.1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중 기업집단 규율법제의 골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유예기간 및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법인 → 감시 필요

다만, 위의 전부개정안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조항(「공정거래법」 제25조 제2항)은 그 시행일이 2022년 12월 30일로 2년의 유예기간동안의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감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정거래법)〉

제25조(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중략)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 2022. 12. 30.] 제25조제2항

표6. 10대 그룹 비영리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 현황

(2021.05 기업집단현황공시 기준)

그룹	비영리법인	이사장(대표)	동일인 여부	계열회사 보유 주식
삼성	삼성복지재단	이서현	-	· 삼성전자 0.08% · 삼성물산 0.04% · 삼성SDI 0.25% · 삼성화재 0.36%
	삼성문화재단	김황식	-	· 삼성전자 0.03% · 삼성물산 0.61% · 삼성SDI 0.58% · 삼성화재 3.06% · 삼성생명 4.68% · 삼성증권 0.22%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정돈	-	· 삼성물산 1.07% · 삼성생명 2.18% · 에스코어 0.14% · 미래컴아이앤씨 0.15%
현대자동차	현대차 정몽구 재단	권오규	-	· 현대글로비스 4.46% · 이노션 9.00%
SK	한국고등교육재단	최태원	동일인	· SK에코플랜트 0.24% · SK네트웍스 0.33% · SK디스커버리 0.61% · SKC 0.19% · SK케미칼 1.06%
	최종현학술원	최태원	동일인	· SK 0.26%
LG	LG연암문화재단	이문호	-	· LG 0.33% · LG화학 0.03%
	LG연암학원	이문호	-	· LG 2.13% · LG상사 0.04%
롯데	롯데장학재단	허성관	-	· 롯데지주 3.24% · 롯데제과 5.70% · 롯데칠성음료 6.28% · 롯데푸드 4.10% · 롯데역사 5.33% · 대흥기획 4.99% · 롯데캐피탈 0.48%
	롯데문화재단	허성관	-	· 롯데지주 0.1% · 롯데쇼핑 0.01% · 코리아세븐 0.58% · 롯데캐미칼 0.03% · 롯데상사 0.38%
	롯데삼당복지재단	변창애	-	· 롯데지주 0.05% · 롯데쇼핑 0.15%
한화	복일학원	이경재	-	· 한화 1.83% · 한화솔루션 0.15%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0.42%
GS	허지영장학재단	허동수	-	· GS 0.06%
	동행복지재단	허동수	-	· GS 1.62%
	남촌재단	허창수	동일인	· GS 1.41%
현대중공업	아산사회복지재단	정몽준	동일인	· 한국조선해양 2.38% · 현대미포조선 0.43% · 현대중공업지주 1.93% · 현대건설기계 2.41% · 현대일렉트릭엔에너지시스템 2.21%
	아산나눔재단	정몽준	동일인	· 한국조선해양 0.61% · 현대오일뱅크 0.25% · 현대중공업지주 0.49% · 현대건설기계 0.62% · 현대일렉트릭엔에너지시스템 0.57%
CJ	CJ나눔재단	이재현	동일인	· CJ 0.56% · CJ제일제당 0.19%
	CJ문화재단	이재현	동일인	· CJ 0.43% · CJ제일제당 0.05%

자료: 한국ESG연구소, 기업집단현황공시(2021.05)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주)한국ESG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정한 투자상담, 권유, 또는 광고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당 연구소는 본 리포트에서 제공된 내용에 관하여 정확성 또는 예측의 실현여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 등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 연구소의 동의 없이 이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